

## ■ 정책 동향 ■

##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내실화 방안

(법무법인(유) 지평 [유정한 변호사](#))**1. 배경**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등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 정보보호 법제는 정보활용에 관한 엄격한 사전동의 원칙, 정보주체의 사후통제권과 정보보호 관련 권리구제 제도 등 여러 면에서 주요 국가에 비해 규제 강도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정보활용에 대한 동의제도가 형식화되어 소위 '알고 하는 동의(informed consent)'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기업들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데에만 주력하고 정보주체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는 점, 새롭게 대두되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 금융권의 정보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적 감독체계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2.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내실화 방안**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2018년 5월 11일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정보활용 동의제도를 실질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회사가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을 단순화·시각화해서 정보주체에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 우선

동의를 양식 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하여 동의서 양식을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정보주체가 정보활용에 대한 동의를 할 때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험 및 소비자 혜택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등급을 산정·제공하는 제도(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 도입도 추진됩니다. 정보주체가 정보활용 현황을 활용목적 및 기관별로 구별하여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강하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소위 '프로파일링', 즉 개인정보의 기계화·자동화된 처리를 통해 개인의 성격, 행태, 취향 등을 분석·예측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권이 강화됩니다.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 기술발전예 따라 금융분야에서도 프로파일링이 개인신용평가 영역 외에도 온라인 대출, 자동화된 보험료 산정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개인신용평가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거절여부와 관계없이 신용등급·점수에 대한 설명요구·이의제기권(정보정정청구, 평가재심사 요구 등)을 폭넓게 인정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 자동화된 개인 평가를 기초로 하는 금융거래에 대한 개인의 적극적 대응권(설명요구권, 의견표현권, 이의제기권)이 도입될 계획입니다.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즉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 하여금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동시키도록 할 수 있는 권리 도입도 추진됩니다.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이 도입될 경우, 정보주체는 본인의 긍정적 정보를 CB사 및 금융회사에 전달하여 개인신용평가 및 여신심사에 유리하게 활용되도록 할 수 있고, 추후 도입 검토 중인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를 실효성 있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금융권 정보보호 및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작년부터 금융권 정보보호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점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형식적 수준에서 운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체계가 ① 금융회사 자체 평가, ② 자율규제기구 점검, ③ 금융감독원 검사 등 중첩적으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일정기간 상시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우수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이 없을 경우 '안전성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금융회사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장에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CB사 등의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포괄적 조치 명령권을 신설하여 대량의 정보유출·침해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실화 방안은 2018년 중 업권별 표준동의서 양식 개정, 신용정보법 및 하위규정 개정 등을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위 방안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불신을 해소시키는 한편 정보의 효율적인 이동 및 활용을 촉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